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가단68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 변호사 이주상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9년경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은 216,849,3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849,3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7.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서울 강서구 D건물 E, F, G, H, I, J, K, L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8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2017. 12.경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4. 2. 2. C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5662, 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8. 12. C와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C로부터 양육비로 매달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C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8채가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이 아무런 재산을 분할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8채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면 652,000,000원이므로 C의 피고와 사이의 적정한 재산분할액은 위 금액의 1/2인 326,000,000원으로 산정된다. 위 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관련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액 216,849,3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도 그 재산권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목적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의 취지 참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참조).

####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와 이혼하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8채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C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 50%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와 C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로서 재산분할 전후로 채무자인 C의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고(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이혼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원상회복되는 것은 심판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의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일 뿐이며 위 권리는 그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채권자가 이를 대위 행사할 수도 없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다른 쟁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